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0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김기용 · 구자근
백종헌 · 김종양 · 최보운
고동진 · 박준태 · 최수진
강대식 · 강명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「제3차 박물관·미술관 진흥 기본 계획」에는 국립 박물관·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,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·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·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

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3제3항 신설).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3(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) ①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조의3(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